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2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신체검사소”를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 중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심리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체검사”를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신체검사”를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체검사”를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기술직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7명을”을 “16명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1”을 “285”로 하고, 일반직 계 “277”을 “2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0”을 “27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2”를 각각 “1,65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51”을 “1,643”으로 한다.

별표 5의 조직란 중 “2개”를 “1개”로 하고, 같은 란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의 정원란 중 “11명”을 “7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 각 호의 영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

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호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 무청장 소속으로 <u>사회복무연수</u> <u>센터·중앙신체검사소</u> 및 병무 민원상담소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u>사회복무연수</u> <u>센터·중앙병역판정검사소</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병역자원국) ①·② (생 략)	제10조(병역자원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u> 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11. <u>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u> <u>검사·심리검사</u> -----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u><신설></u>	15. <u>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u> <u>에 관한 사항</u>
15. ~ 22. (생략)	16. ~ 23. (현행 제15호부터 제 22호까지와 같음)
<u>제3장 중앙신체검사소</u>	<u>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u>
제13조(직무) <u>중앙신체검사소</u> 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직무) <u>중앙병역판정검사소</u> -----.
1. 지방병무청장이 <u>신체검사</u> 를	1. ----- <u>신체검사</u> 및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 무에 관한 사항 2. <u>중앙신체검사</u>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u>신체검사</u>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4.·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14조(소장) ① <u>중앙신체검사소</u> 에 소장 1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u>중앙신체검사소</u>에 두는 보좌 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 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u>심리검사</u>----- ----- 2. <u>신체검사 및 심리검사</u> ----- ----- 3. <u>신체검사 및 심리검사</u>----- ----- 4.·5. (현행과 같음) 6. <u>의료기술직의 교육 등에 관 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조(소장) ① <u>중앙병역판정검 사소</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하부조직) ----- ----- ----- -- <u>중앙병역판정검사소</u>----- ----- -----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7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u>16명</u>----- -----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81</u>		<u>285</u>	+4	
	.		.		.		
	.		.		.		
일반직	계		<u>277</u>		<u>281</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0</u>		<u>274</u>	+4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662</u>	• <u>1,654</u>	-8
일반직 계	<u>1,662</u>	<u>1,654</u>	-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51</u>	<u>1,643</u>	-8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8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	7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